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757호 2020. 7. 1.(수)



선	기관의 장
결	

## 조 례

제2582호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제2583호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9
제2584호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12
제2585호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제2586호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	37
제2587호 거창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	44

## 규 칙

제1292호 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	49
--	----

## 고 시

제2020-74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	54
제2020-78호 거창군관리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55
제2020-80호 도로명주소 고시 .....	59

**공 고**

제2020-892호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1  
제2020-904호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9  
제2020-904호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78  
제2020-9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 89

<b>회 람</b>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0년 7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582호

###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군”을 “거창군”으로 “자율방범대”를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인 명예경찰대”란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중 “자율방범대와 연합회”를 “자율방범대와 연합회, 외국인 명예경찰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가”를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방범초소 개선사업
3.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에 대한 예산”을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2항 중 “군수는 자율방범대의”를 “군수는”으로 한다.

제6조 중 “공적이 현저한 자율방범대와”를 “공적이 뚜렷한”으로 한다.

제7조 중 “자율방범대원”을 “대원”으로 한다

제8조·제9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군</u>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치 순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u>자율방범대</u>가 주민생활안전, 범죄예방을 위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율방범대”란 <u>군</u>에 주소지를 둔 방범의식이 투철한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및 지역안전예방 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p> <p>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b>제3조(지원대상)</b> 지원대상은 거창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해 온 <u>자율방범대와 연합회</u>로 한다.</p>	<p><u>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거창군</u>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치 순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u>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u>가 주민생활안전, 범죄예방을 위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율방범대”란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u>에 주소지를 둔 방범의식이 투철한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및 지역안전예방 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u>“외국인 명예경찰대”란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u></p> <p><b>제3조(지원대상)</b> 지원대상은 거창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해 온 <u>자율방범대와 연합회, 외국인 명예경찰대</u>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4조(지원) ① <u>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가</u>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방법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 구입비 등 소모성 운용비, 야식비, 출동비</u></li> <li>2. <u>방법초소 유지 및 관리 비용</u></li> <li>3. <u>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u></li> <li>4. <u>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u></li> </ol>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에 대한 예산</u>을 중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li> <li>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li> <li>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요구와 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li> <li>4. <u>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u></li> </ol>	<p>제4조(지원) ① <u>군수는</u>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방법활동에 필요한 경비</u></li> <li>2. <u>방법초소 개선사업</u></li> <li>3. <u>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 경비</u></li> <li>4.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u></li> </ol>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예산</u>을 중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li> <li>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li> <li>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요구와 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li> <li>4. <u>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u></li> </ol>
<p>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생략)</p> <p>② <u>군수는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제5조(지도 및 감독)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군수는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제6조(포상) 군수는 방법활동 등을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u>공적이 현저한 자율방범대와</u> 대원에게 「거창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p>	<p>제6조(포상) 군수는 방법활동 등을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u>공적이 뚜렷한</u> 대원에게 「거창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p>
<p>제7조(교육) 군수는 필요시 거창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u>자율방범대원</u>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7조(교육) 군수는 필요시 거창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u>대원</u>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u>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u></p>	<p>&lt;삭제&gt;</p>
<p><u>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lt;삭제&gt;</p>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35
----------	---------

발의일자	2020. 6. 2.
발 의 자	신재화, 김향란, 박수자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의원

**1. 제안이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범죄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변경
- 나. 용어 정의 및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제3조)
- 다. 지원범위 규정(안 제4조)
- 라. 조문정비(안 제5조~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6. 3.~6. 9.
    - 나) 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0년 7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583호

###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중 거창군에 거주하고 있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군수는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심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36
----------	---------

발의일자	2020. 6. 2.
발 의 자	심재수, 이흥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권순모 의원

**1. 제안이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2조)
- 나. 군수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
- 나. 예산조치 : 향후 확보예정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6. 3.~6. 9.
    - 나) 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0년 7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584호

###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재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방재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둔다.

③ 부단장은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읍·면 단위 방재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 ② 읍·면 방재단은 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 ③ 읍·면 단위 방재단 대표(이하 “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제4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단장은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읍·면 대표는 해당 읍·면 방재단을 대표하고 해당 읍·면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5조(총무 및 임기)** ① 방재단에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위하여 총무 1명을 두고 총무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정한다.
- ② 단장, 부단장, 총무,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순찰 및 신고·정비
3.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방재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 관리
7. 재해 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방재단은 군 외의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시기·규모 등은 제13조에 따른 거창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8조(소집)**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증폭기(앰프를 말한다)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9조(방재단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단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방재단 활동지원)**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단원의 제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출입증 발급)**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훈련)** ① 교육 및 훈련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육: 단장은 연 2시간 이상, 단원은 연 1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제13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15조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 하여는 「의사 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 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성 명	(남/여)	연 령		혈액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					

위 사람은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휴대전화)
주소				대표전화	
담당자	(휴대전화)		부서명		
인원	남명	여명	총인원	명	
장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명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붙임: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위 단체는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 명부를 붙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1							
2							
3							
4							
⋮							

[별지 제4호서식]

## 활 동 확 인 서

성 명		(인)	등록번호	서식1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시간)		
	장 소	○○읍·면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순찰      시간, ○○마을 차량통제      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시간 등		
[건의사항]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 명	(인)

본인은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위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확인자는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나 및 민간단체의 대표 등

[별지 제5호서식]

##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횃 수	시 간	
1				
2				
3				
⋮				

1. 등록번호

가.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나.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3호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2. 횃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3.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엑셀 등으로 관리

4.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5.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6호서식]

##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요내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거창군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7호서식]

## 출 입 증

출 입 증	
사 진 (3×4cm)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 5.5cm →

지역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거창군수 (인)	

바탕 배경에 거창군 상징(회장) 삽입

[별지 제8호서식]

**요양 [ ], 장애 [ ], 장제 [ ], 유족 [ ] 보상청구서**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그 밖에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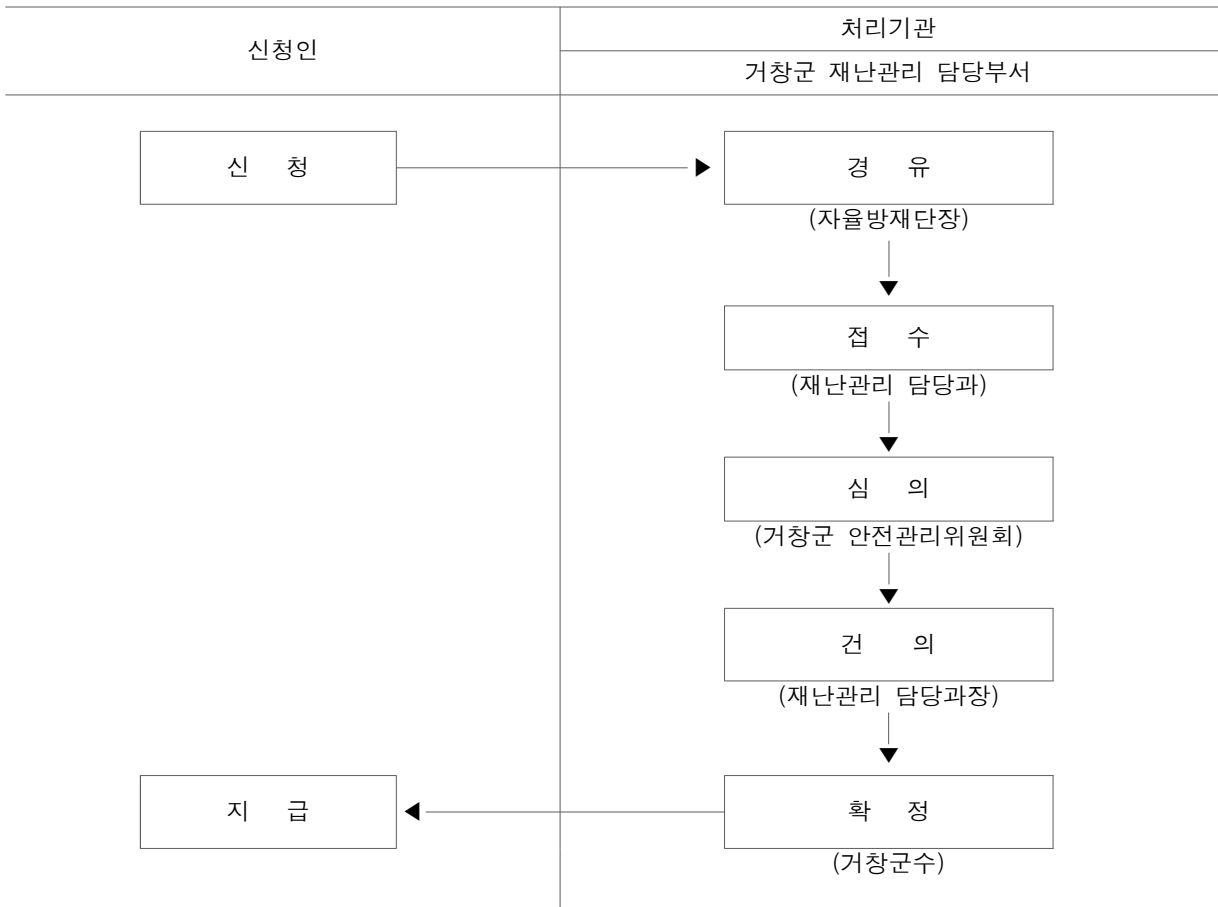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

#### 나. 관련조문 : 제10조(방재단 활동지원)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9,744	9,744	9,744	9,744	9,744	48,720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운영비 보조 : 9,744천원

작성자 :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0-45
----------	---------

제출일	2020. 5. 29.
제출자	거창군수

## 1. 제안 이유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방재단 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보상금 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재단을 활성화하여 지역 방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부단장 추가함(안 제2조)

나. 단원 해촉 권한 변경(안 제6조)

1) (현행)단장 ⇒ (변경)군수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권한은 군수에게 있음

다. 지역자율방재단 여비 지급기준 신설(안 제10조)

1)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준용

라. 재해보상금 지급절차 및 기준 신설(안 제15조, 별표)

1) 재해를 입은 날,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해보상 청구

2)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결정

마. 재해보상금 수령인 선정방법 신설(안 제16조)

1) 유족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에 따름

2) 유족 대표자 선정

바. 그 밖의 조문 순서, 내용 등 정비(전 조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별표 4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9.744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5. 8.~5. 27.

나) 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  
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0년 7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585호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2(시설 사용료의 감경) ①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 감경은 비수기(금요일·토요일, 7·8월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한정한다.

③ 시설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7조(입장 및 행위제한)</b> ① 군수는 생태교육장의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li> <li>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li> <li>3.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li> <li>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li> <li>5.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②~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b>제7조(입장 및 행위제한)</b> ① 군수는 생태교육장의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li> <li>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li> <li>3.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li> </ol> <p><u>&lt;삭 제&gt;</u></p> <p>4.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b>제8조2(시설 사용료의 감경)</b> ①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p> <p>② <u>별표 2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 감경은 비수기(금요일·토요일, 7·8월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한정한다.</u></p> <p>③ <u>시설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u></p> <p><u>&lt;삭 제&gt;</u></p>
<p><b>제14조(시행규칙)</b>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lt;삭 제&gt;</u></p>

[별표 2] 무료입장 및 시설 사용료 감경 대상

무료입장	시설 사용료 감경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는 공식행사 4.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5.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2. <u>19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족</u>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u>경보 발령 시</u> 14. 그 밖에 생태교육장 이용으로 공공복리 및 공익 증진 등 <u>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50퍼센트</u>  <u>감경</u>

[별지 서식]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 사용 신청서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남 / 여)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b>(남 / 여)</b>  (서명 또는 인)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    ]에는 사용하려는 시설에 √표를 합니다.
	시설명  [    ] 게스트하우스, [    ]교육세미나실,
	사용 인원  <b>명(남 : 명/여 : 명)</b>
	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용료 감경사유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b>첨부서류</b>	사용료를 감경받는 경우 필요한 증명자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0-46
----------	---------

제 출 일	2020. 5. 29.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 이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 사용료 감경근거를 마련하여 누구나 생태교육장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재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주민에게 쉽게 다가와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설 사용료 감경근거 신설(안 제8조의2, 별표 2)

- 1) 감경대상 :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재난위기경보 발령 시 등
- 2) 감경률 : 50퍼센트
- 3) 감경시기 : 비수기(금요일·토요일, 7월·8월 제외한 기간)

나. 자치법규 정비대상 삭제(안 제7조제1항제4호, 제1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4. 6.~4. 2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감경대상, 성별 구분항목 신설)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0년 7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586호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라 한다)을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부대 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정비공사(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노후 상·하수도 설비 정비공사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공사
  4.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5. 공동주택 지붕·내벽·외벽 유지보수공사(전용부분을 제외한다)
  6. 노후 소화·피뢰설비 교체 공사
  7.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통신설비 정비공사
  8.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 주기 15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물 관리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로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의 지원 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보조신청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사업예정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을 거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신청인은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인하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입주

자대표회의 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통장을 사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1. 신청인	공동주택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사용검사일 (준 공 일)	
<b>2. 신청내용</b>				
사 업 목 적 및 내 용				
사업예정기간				
총 사 업 비				
보조신청금액				
자 기 자 본 부 담 액				
그 밖에				
<p>「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관리주체):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확 인(입주자대표):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거 창 군 수 귀하</b></p>				
<p>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산출근거, 자기자본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p>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1) 50,000천원/단지(최대)
- 2) 승강기교체 지원사업은 대당 20백만원(단지당 150백만원 내)

####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총 비용	500	500	500	500	500	2,500	
세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200	200	200	200	200	1,000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사업	300	300	300	300	300	1,500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 10개단지 × 20,000천원/연
2.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사업 : 15대 × 20,000천원/연

작성자 :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37
----------	---------

발의일자	2020. 6. 2.
발 의 자	김향란, 이흥희,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권순모 의원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군민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위배소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서 조례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 구체화(안 제3조제1항)

- 1)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제4호)
- 2) 공동주택 지붕·내벽·외벽 유지보수공사(전용부분을 제외한다)(제5호)
- 3) 노후 소화·피뢰설비 교체 공사(제6호)
- 4)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통신설비 정비공사(제7호)
- 5)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 주기 15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 (제8호)

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신청에 따른 단서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 1)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관리단집회  
의결을 거쳐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음

라.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삭제(현행 제6조~제10조)

- 1) 이유 : 「지방재정법」상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중복되어 「지방재정법」 위배
- 2)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마. 불필요한 규정 정비(현행 제11조~제13조)

1) 수당, 준용, 시행규칙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건축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6. 3.~6. 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0년 7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587호

### 거창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

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을적정성 심의·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기획예산담당관
3. 경제교통과장
4. 산림과장
5. 환경과장

6.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농어업 관련 단체의 추천을 통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5명

나. 군의회와 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농어업 분야 전문가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거창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거창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지원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구분	지급 대상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월 10만원 지급시	농어업인	219	219	219	219	219	1,095
	농어가	142	142	142	142	142	710
월 5만원 지급시	농어업인	110	110	110	110	110	550
	농어가	71	71	71	71	71	355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1. 월 10만원 지급할 경우

가 농어업인 :  $18,264\text{호} \times 100,000\text{원} \times 12\text{월} = 21,916,800,000\text{원}$

나 농어가 :  $11,804\text{호} \times 100,000\text{원} \times 12\text{월} = 14,164,800,000\text{원}$

### 2. 월 5만원 지급할 경우

가. 농어업인 :  $18,264\text{호} \times 50,000\text{원} \times 12\text{월} = 10,958,400,000\text{원}$

나. 농어가 :  $11,804\text{호} \times 50,000\text{원} \times 12\text{월} = 7,082,400,000\text{원}$

(2019. 12월 말 기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수)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 거창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의안 번호	2020-38
----------	---------

제 출 일	2020. 1. 21.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어업인에게 대가를 정책적으로 지원  
(2019. 7. 25. 주민조례제정청구)

###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수당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4조)

나. 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 등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다. 지급대상, 방법, 지급액, 지급신청 등을 정함(안 제7조~제9조)

1)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라.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부칙)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 조치 : 예산 확보 예정

다. 기타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 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0년 7월 1일

거창군 규칙 제1292호

### 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고방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을 “영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동일”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8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지방세 징수의 예”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위반행위란 중 “법 제28조제4항”을 “법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u>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li> <li>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li> <li>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li> <li>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li> </ol> <p><u>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제4조(신고방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위반행위를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으로,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u></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u>동일</u>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li> <li>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li> <li>3. 해당 연도에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li> </ol>	<p><u>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위반행위를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으로,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u></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u>같은</u>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li> <li>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li> <li>3. 해당 연도에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li> </ol>

현 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8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u>지방세 징수의 예</u>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li>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나 착오로 지급된 경우</li> </ol>	<p>4. <u>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u></p> <p>제8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u>지방재정법 시행령</u>」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u>규정</u>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li>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나 착오로 지급된 경우</li> </ol>

## 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0-34
----------	---------

제출연월일	2020. 6. 22.
제 출 자	인구교육과장

### 1. 개정이유

거창군민이 아니면서 신고포상금의 수령을 위해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로 포상금이 빨리 소진되어 중요한 사안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의 기준을 일정기간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 조건 추가 신설(안 제6조)

나. 법령위임 없이 주민 권익제한 규정 삭제(안 제8조)

1) 내용 :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2) 근거

가) 법제처 규칙 자율정비 과제

나) 지방세의 징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6. 1.~6. 2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 농지조성 발작물 재배
2. 사업내역

위 치	사업시행면적(m <sup>2</sup> )			사업비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구분	지 적	개간 승인면적			주 소	성 명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산89-2	당초	14,834m <sup>2</sup>	2,305m <sup>2</sup>	당초 : 8,184천원 변경 : 18,150천원	당초 : 2019. 7. 17. ~ 2020. 7. 16 변경 : 2019. 7. 17. ~ 2020. 12. 31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233, 204동 70*호 (하단동, 가락타운)	김 옥 *
	변경	14,834m <sup>2</sup>	2,160m <sup>2</sup>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20년 6월 25일

# 거 창 군 수

●거창군 고시 제2020-78호

거창군관리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문화시설, 하천)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01일

거창군수

1.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0	35 ~45	주간선 도로	1,350	대1-11	중2-59	일반 도로	거창IC	건고382호 (1967.05.24)	-
변경	중로	2	78	15 ~20	주간선 도로	1350	대3-10	중2-59	일반 도로	거창IC	건고382호 (1967.05.24)	부분실효
기정	대로	1	11	35	주간선 도로	5,650	대1-10	대1-14	일반 도로	거창 송정	건고382호 (1967.05.24)	-
변경	대로	1	11	35	주간선 도로	2,650	대1-14	중1-15	일반 도로	거창 송정		부분실효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700	광3-11변완 충녹지	남상월평8 29-5	일반 도로	정장 공업	경고43호 (1985.03.11)	-
변경	중로	2	1	15	집산 도로	200	중1-14	남상월평 950-8	일반 도로	정장 공업		부분실효
기정	중로	2	13	15	주간선 도로	1,230	소1-49	소1-48	일반 도로	대성 고교	건고194호 (1976.12.07)	-
변경	소로	1	75	10	보조간선 도로	820	소1-48	거창가지 1338-4	일반 도로	대성 고교		부분실효
기정	중로	2	19	15	보조간선 도로	625	소3-107	중3-11	일반 도로	가조	경고115호 (1979.05.24)	-
변경	소로	3	264	4~8	국지 도로	420	소2-185	소3-107	일반 도로	가조		부분실효
기정	중로	3	11	12	보조 간선 도로	810	중2-76	중2-19	일반 도로	중1-19	경고115호 (1979.05.24)	-
변경	중로	3	11	12	보조 간선 도로	564	중2-76	소2-186	일반 도로	중1-19		부분실효
기정	소로	2	67	8	국지 도로	396	소2-71	소2-65	일반 도로	-	경고256호 (1977.04.25)	-
변경	소로	2	67	8	국지 도로	206	소2-68	중2-13	일반 도로	-		부분실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70	8	국지 도로	93	중2-17	소3-4	일반 도로	-	경고256호 (1977.04.25)	-
변경	소로	2	70	8	국지 도로	46	중2-17	거창김천 213-12	일반 도로	-		부분실효
기정	소로	2	91	8	국지 도로	263	소1-19	소2-87	일반 도로	-	경고103호 (1978.03.20)	-
변경	소로	2	91	8	국지 도로	53	소1-19	소2-89	일반 도로	-		부분실효
기정	소로	2	102	8	국지 도로	318	소2-98	소2-104	일반 도로	-	경고103호 (1978.03.20)	-
변경	소로	2	102	8	국지 도로	215	소2-104	거창가지 349-10	일반 도로	-		부분실효
기정	소로	2	105	8	국지 도로	478	중1-16	중2-13	일반 도로	-	경고103호 (1978.03.20)	-
변경	소로	3	263	4~8	국지 도로	155	중2-13	거창가지3 53-2	일반 도로	-		부분실효
기정	소로	2	111	8	국지 도로	403	거창상립 420-3	소1-20	일반 도로	-	경고103호 (1978.03.20)	-
변경	소로	2	111	8	국지 도로	345	소1-20	거창상립 423-5	일반 도로	-		부분실효
기정	소로	2	200	8	국지 도로	106	중2-20	소3-122	일반 도로	옹양	경고173호 (1980.07.14)	-
변경	소로	3	265	4	국지 도로	106	중2-20	소3-122	일반 도로	옹양		부분실효
기정	소로	2	204	8	국지 도로	380	소2-203	소2-206	일반 도로	옹양	경고173호 (1980.07.14)	-
변경	소로	2	204	8	국지 도로	133	소2-203	소2-201	일반 도로	옹양		부분실효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636	중3-10	소3-11	일반 도로	-	경고43호 (1985.03.16)	-
변경	소로	3	12	4~8	국지 도로	636	중3-10	소3-11	일반 도로	-		부분실효
기정	소로	3	47	6	국지 도로	757	중2-49	중2-49	일반 도로	-	경고465호 (1992.12.24)	-
변경	소로	3	47	6	국지 도로	646	중2-49	중2-49	일반 도로	-		부분실효
기정	소로	3	57	6	국지 도로	583	대1-11	소1-30	일반 도로	-	경고465호 (1992.12.24)	-
변경	소로	3	57	6	국지 도로	196	소1-30	거창송정 532-1	일반 도로	-		부분실효
기정	소로	3	68	6	국지 도로	110	소2-77	소2-285	일반 도로	-	경고465호 (1992.12.24)	-
변경	소로	3	68	6	국지 도로	58	소2-97	소2-285	일반 도로	-		부분실효
기정	소로	3	111	6	국지 도로	550	소3-110	중3-11	일반 도로	가조	경고115호 (1979.05.24)	-
변경	소로	3	111	6	국지 도로	180	소2-187	소2-188	일반 도로	가조		부분실효
기정	소로	3	115	6	국지 도로	307	중2-76	중3-11	일반 도로	가조	경고115호 (1979.05.24)	-
변경	소로	3	115	6	국지 도로	86	소2-192	소2-293	일반 도로	가조		부분실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중로	2	16	15	보조간선도로	438	중1-16	중2-10	일반도로	동동공원	경고465호 (1992.12.24)	실효
폐지	중로	3	1	12	집산도로	259	중1-16	중2-13	일반도로	거창가지	건고164호 (1976.12.07)	실효
폐지	소로	2	61	8	국지도로	65	중1-11	소2-52	일반도로	-	건고383호 (1971.06.26)	실효
폐지	소로	2	63	8	국지도로	47	중2-17	소3-29	일반도로	-	경고256호 (1977.04.25)	실효
폐지	소로	2	65	8	국지도로	86	중2-17	소3-28	일반도로	-	경고256호 (1977.04.25)	실효
폐지	소로	2	98	8	국지도로	665	중2-14	소2-107	일반도로	-	경고465호 (1992.12.24)	실효
폐지	소로	2	107	8	국지도로	183	중1-16	거창가지1 323-21	일반도로	-	경고103호 (1978.03.20)	실효
폐지	소로	2	125	8	국지도로	203	중2-13	중1-16	일반도로	-	경고465호 (1992.12.24)	실효
폐지	소로	2	126	8	국지도로	178	중2-127	중1-16	일반도로	-	경고465호 (1992.12.24)	실효
폐지	소로	2	127	8	국지도로	215	중3-1	소2-125	일반도로	-	경고465호 (1992.12.24)	실효
폐지	소로	2	141	8	국지도로	122	중2-5	소2-145	일반도로	대평지구	경고348호 (2007.08.30)	실효
폐지	소로	2	145	8	국지도로	96	소2-143	소2-60	일반도로	-	경고317호 (1999.12.15)	실효
폐지	소로	3	29	6	국지도로	387	중1-15	중3-4	일반도로	-	경고465호 (1992.12.24)	실효
폐지	소로	3	36	6	국지도로	108	중2-13	소2-111	일반도로	-	경고465호 (1992.12.24)	실효

나. 공간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4	수월공원	어린이 공원	가조면 수월리 495-5일원	1,500	감)23	1,477	경고173호 (1980.07.14)	부분실효
폐지	3	동동공원	근린 공원	거창읍 대동리 542-4일원	277,000	감)277,000	-	경고43호 (1985.03.11)	실효
폐지	15	동호공원	근린 공원	웅양면 동호리 1069일원	93,400	감)93,400	-	경고173호 (1980.07.14)	실효

다. 공간시설(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광3-11호선변 완충녹지	완충 녹지	거창읍 88고속국도변	136,370	감)136,370	-	경고43호 (1985.03.11)	실효
폐지	2	대1-10호선변 완충녹지	완충 녹지	거창읍 대1-10호선변	16,530	감)16,530	-	경고43호 (1985.03.11)	실효
폐지	3	대1-11호선변 완충녹지	완충 녹지	거창읍 대1-11호선변	10,020	감)10,020	-	경고43호 (1985.03.11)	실효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문화시설	문화 산업 단지	거창읍 장팔리 7 일원	60,224	감)41,876	18,348	경고114호 (1997.04.29.)	부분실효

마. 방재시설(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폐지	1	황강	국가 하천	거창대평 1485-1	거창대평 943-1	거창교	2.50	150~281	587,732	경고465호 (1992.12.24.)	실효
폐지	2	위천	지방 하천	북상농산 14	거창대평 1485-1	거창2교	5.55	50~160	595,000	경고465호 (1992.12.24.)	실효
폐지	3	웅곡천	지방 하천	거창장팔 1459-82	거창김천 472-85		4.55	7~30	52,680	경고317호 (1999.12.15.)	실효
폐지	5	계수천	지방 하천	웅양한기 465	거창학 1047-1		19.5	30~60	953,000	경고173호 (1980.07.14.)	실효

2. 실효일자 : 2020. 7. 1.

3. 실효사유 : 군계획시설사업 미 시행에 따른 실효

4. 지형도면 : 실음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5. 관계도서는 거창군 도시건축과(☎ 055-940-358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1.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사동1길 68-31 등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개화길 397-11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개화길 397-115	20090401	20200701	개화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3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개화길 397-119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개화길 397-111	20090401	20200701	개화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794-7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841-27	20091228	20200701	송계사를 지나 고제면으로 가 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22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사동1길 68-31	20090401	20200701	마을 서북 1킬로미터 산골짜 기에 분청사기를 굽던 가마터 가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327-10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어인길 935	20090401	20200701	어인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및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이 일부개정 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함.(안 제2조의2)

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확대함

(안 제4조, 전문개정)

1) 시행령에서 기금사용을 금지하는 항목 외 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의 모든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 변경(안 제6조)

·당연직 6명, 위촉직 3명 ⇒ 당연직 5명, 위촉직 5명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7.15.(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안전총괄과 ☎ 055-940-3632, FAX 055-940-3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4.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 055-940-3632, FAX 055-940-36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안전총괄과장
2. 기금출납원: 안전관리담당주사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군수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 조치 비용
  -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4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8호”를 “제6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74조제8호”를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재난 및 기금 운용 관련 민간전문가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는 위원 정수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담당이 된다.

제8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 조제3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u></p>	<p><u>제2조의2(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운용관: 안전총괄과장</li> <li>2. 기금출납원: 안전관리담당주사</li> </ol> <p><u>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li> <li>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li> </ol> </li> <li>2. 군수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 조치 비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li> <li>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li> </ol> </li> </ol> </li> </ol>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4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재무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재난 및 기금운용 관련 민간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수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는 위원 정수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군수는 제6조제1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재난 및 기금운용 관련 민간전문가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는 위원 정수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2. 개정이유 :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기업의 구직난 해소와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위하여 청년연령을 상향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내용 변경
    - 1) “제조업체 등” → “기업”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 2) “퇴사하거나 주소” → “주소” 로 한다.(안 제6조)
    - 3) 애향장려금 지원대상 29세 → 34세(안 제2조)
  - 나. 조문 정비(안 제4조제2항, 제5조)
  - 다. 조문 삭제(안 제7조, 제8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0. 6. 30. ~ 2020. 7. 20.(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제출할 곳

-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경제교통과)
- 2) 전화 055-940-3373, 팩스 055-940-3349, 이메일 [hure20@korea.kr](mailto:hure20@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총괄담당 【☎(055) 940-337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중 “제조업체 등”을 “기업”으로 한다.

제2조·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취업대상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종사하는 34세까지의 근로자로 한다.

② 장려금 지원대상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지원신청)**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소속 기업 대표의 추천서와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각 기업에서 추천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 범위 및 시기)** 장려금은 한 사람당 한번만 500천원을 지급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퇴사하거나 주소”를 “주소”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군내 제조업체</u> 등의 취업을 장려하고, 고향사랑마음을 고취하기 위하여 애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거창군 소재 기업</u>의 취업을 장려하고, 고향사랑마음을 고취하기 위하여 애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지원대상의 기준)</b>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u>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u></p> <p>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u>군내 출신(출생시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군내인 사람)이거나 군내 학교를 졸업한 사람</u></p> <p>② <u>군내에 주소를 두고 군내 제조업체 등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u> 만 29세 이하인 사람</p>	<p><b>제2조(지원대상)</b> ①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취업대상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종사하는 34세까지의</u> 근로자로 한다.</p> <p>② 장려금 지원대상의 세부기준은 <u>규칙으로 정한다.</u></p>
<p><b>제3조(지원대상자 추천 등)</b> ① <u>제조업체</u> 등에서는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와 <u>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u>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p> <p>2. 졸업증명서</p> <p>3.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p> <p>4.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p> <p>5. 지방세납세증명서</p> <p>② 제1항제1호·제5호는 <u>공적 장부의 확인으로</u> 같음하여야 한다.</p>	<p><b>제3조(지원신청)</b>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u>근로자는</u> 소속 <u>기업 대표의</u> 추천서와 <u>규칙으로 정하는</u> 서류를 갖춰 <u>군수에게</u> 신청해야 한다.</p>
<p><b>제4조(지원대상자 심사)</b> ① (생략)</p> <p>② <u>군수는</u> 각 <u>제조업체</u> 등에서 추천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u>확인</u> 과정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u>거창군정</u>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한다.</p>	<p><b>제4조(지원대상자 심사)</b>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군수는</u> 각 <u>기업에서</u> 추천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u>예산의 범위에서</u> <u>거창군정조정위원회</u>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p>
<p><b>제5조(지원 범위 및 시기)</b> 장려금은 한 사람당 한번만 500천원을 지급하되, <u>반기별로</u> 지급할 수 있다.</p>	<p><b>제5조(지원 범위 및 시기)</b> 장려금은 한 사람당 한번만 500천원을 지급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바로 돌려받아야 한다.</p> <p>1.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p> <p>2. 장려금을 지원받고 6개월 이내에 퇴사하거나 주소를 이전한 경우</p> <p>② (생략)</p>	<p>제6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바로 돌려받아야 한다.</p> <p>1.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p> <p>2. 장려금을 지원받고 6개월 이내에 <u>주소</u>를 이전한 경우</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홍보요원 위촉) ① 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람은 군정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② 홍보요원은 애향심으로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p>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lt;삭 제&gt;</p>

## 관계 법령

### □ 「지방재정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공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거.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청년기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11.] [법률 제16799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4. 1. 21., 2019. 12. 10.>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12.] [대통령령 제30672호, 2020. 5. 12., 일부개정]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가.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 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제2조)
  - 다. 지원대상의 세부기준을 정함(제3조)
  - 라. 지원신청 구비서류 구체화함(제4조)
  - 마.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함(제5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0. 6. 30. ~ 2020. 7. 20.(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제출할 곳

-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경제교통과)
- 2) 전화 055-940-3373, 팩스 055-940-3349, 이메일 [hure20@korea.kr](mailto:hure20@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총괄담당 【☎(055) 940-337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본사, 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취업대상 기업”이란 상시고용인원 3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3.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제3조(지원조건)**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애향장려금 지원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둔 사람
2.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취업일 이전 10년 이상 군에 주민 등록을 둔 사람

제4조(지원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애향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속 기업 대표의 근로자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장려금의 투명한 지급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자 명부를 작성하여 10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 . .
주소			연락처
등록기준지			
기업명			
취업년월일	근무부서		
졸업학교명 (중·고등학교에 한함)	졸업년월일		
금융기관	계좌번호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애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1부(중·고등학교 중 택 1)	2. 근로자 추천서 1부(근무기업 대표 발행분)
담당자 확인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기본증명서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 에 해당 동의서류에 √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같음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근로자 추천서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기업명	연락처		
근무부서	취업일 (근무기간 년)		
추천자격	직위	성명	
추천사유			

본 사에 근무하고 있는 상기자를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대표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제출서류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

**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 안내**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속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추천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확인인 기업명  
대표 : (서명 또는 인)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급자 명부

(단위 : 천원)

연번	지급년도	지급액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등록기준지	졸업학교	기업명	소재지	취업일

[ 작성요령 ]

1. 생년월일은 성별까지 기재
2. 주소는 시·군·구 읍면동까지만 기재
3. 등록기준지는 시·군·구 읍면동까지만 기재

## 관계 법령

### □ 「지방재정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공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거.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청년기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11.] [법률 제16799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4. 1. 21., 2019. 12. 10.>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12.] [대통령령 제30672호, 2020. 5. 12., 일부개정]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제77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문, 부과지서, 자동차 검사명령서,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건설기계검사지시 최고 통지,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검사유효기간 경과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1항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건설기계 직권말소, 검사안내 및 위반자 우편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20. 7. 1. ~ 2020. 7. 20.
3. 공고대상 : 62건(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3)

2020년 7월 1일

## 거 창 군 수